
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」

주요 개정 내용

□ 개요

- (배경)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및 질병군 청구방법 개정 고시* 등을 반영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공고 개정 필요

*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일부개정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33호, 2026.2.4.)

- (관련 근거)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(제2026-156호, 2026.6.29.)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」일부 개정

□ 주요 개정내용

- [별표 4] 진료코드
 - (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)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에 따른 기본코드 및 산정코드 반영
- [별표 5] 코드세부내역
 - (질병군 부가코드) 청구방법 고시 개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33호, 2026.2.4.)에 따라 질병군 부가코드 관련 문구 정비 등

□ 시행일자

- 공고한 날부터 시행(단, 별표 5 코드세부내역은 2026.8.1.부터 시행)

참고

진료코드 관련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주요 반영 내용

□ 기본코드 관련

구분	진료행위명	대분류코드 반영 내용
의·치과	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(의료급여)	■ (신설) 분류번호 6: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
	마취료	■ (신설) 치과마취료(LZ)
	입원형 호스피스	■ (신설) 분류번호 5:한방병원 내 의과
	연명의료중단등결정	■ (변경) 분류번호 3:병원, 요양병원, 한방병원

□ 산정코드 관련

구분	대분류명칭	산정코드 반영 내용
의·치과	집중치료실 입원료	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코드(의미Ⅰ) 신설 3:입원 초일~7일까지(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), 4:입원 8~14일까지(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)
	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	■ 산정코드 문구 변경 1:2시간이상~6시간미만(정신안정실)
	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(의료급여)	■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 산정코드(의미Ⅲ) 신설 1: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
	마취료	■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코드(의미Ⅱ) 신설 N: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(별표3), O: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야간(별표3), P: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공휴일(별표3)
	처치 및 수술, 중재적 방사선시술	
	응급 기본진료료	■ 가산 추가 신설에 따른 산정코드(의미Ⅱ) 신설 Z:응급